

허가 조건

1. 위해성관리계획을 승인 받은(마약정책과-9891, 2022.8.11.) 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변경허가(2022.10.20.) 후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보고하고, 이후 매년 보고할 것
2. 만일,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